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청렴포털 신고(<http://www.clean.go.kr>)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고
 - 공식 누리집(<https://www.arko.or.kr/>) - [공개·민원] - [신고센터]
 -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신고, 갑질행위 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등
3. 레드휘슬 헬프라인 익명신고
 - 공식 누리집(<https://www.arko.or.kr/>) - [공개·민원] - [신고센터]
 - 익명부패신고(레드휘슬 헬프라인)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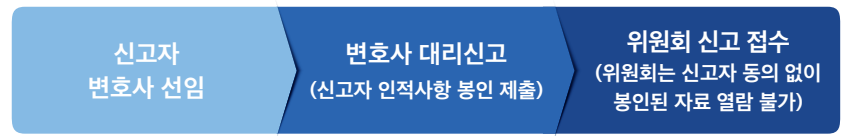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 및 협조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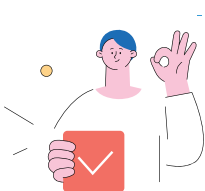
*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등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와 협조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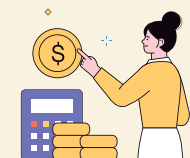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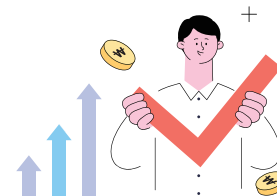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3.9.22. 이후의 신고부터는 국가·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포상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